

꼭막힌 세월호법 정국... 여야 출구전략없이 공방

與 “민생법안 분리처리” vs 野 “여당이 답내해야”

단원고 특례입학 법안 등 시한 촉박 안전들 줄지연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애초 예정된 13일 본회의개최가 무산되는 등 파행국회가 이어지면서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도 연쇄적으로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서 꼭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특단의 돌파구가 나오기 전에는 일부 시한이 촉박한 안전들은 때를 놓쳐 법안으로 성립할 기회마저 상실될 처지에 놓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회에서 의원 20여명이 나

서 재협상 불가를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 파기를 비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의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현재 고교 3년생들이 수시입학에서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알려졌다. 15~17일이 연휴인 만큼 18일까지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현재 단원고 3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이번 정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당장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21일부터 예정했던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된 채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만일 19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20일 이후부터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 발목이 잡혔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협상타결을 위해 ‘거대 여당’이 답을 내야 한다고 맞불을 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에 쏠린 ‘세월호 해법’

박영선 “지난달 야당에 특검추천권 줄 수 있다 했다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취임 한 달을 맞았으나 꼭 막힌 정국으로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대표는 13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국회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마음이 무겁다”며 세월호특별법 및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로 막혀있는 여야 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 선화로 초래된 세월호법 재협상 국면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전권이 위임됐지만,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김 대표 ‘역할론’이 나오는 것도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공개적으로 ‘김무성 역할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2010년 당시 여야 원내대표 카운터파트였던 새정치연합 박지연 전 대표는 “정치력이 출중한 김 대표가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압박을 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좀 더 직접적으로 김 대표의 ‘결자해지론’을 주장했다. 김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를 협상 무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김 대표는 이제까지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도 알개 모르게 야당과 막후 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 산고 끝에 이른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금방 당 대표가 나서서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불가피하고, 갈수록 김 대표의 움직임에 쏠리는 시선의 무게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조선 이개호 의원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당양·합평·영광·장성)이 국회 등원 14일 만에 원내대표에 임명됐다.



원내대표와 부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원내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선수 등 경력을 중시하는 국회 관행상 보궐선거를 통해 갖 등원한 조선의원을 원내대표단으로 기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상임위를 ‘미래 창조과학총회위원회(이하 미방위)’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파행정국 언제쯤 풀리려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파행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與, 광양·순천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지역현안 논의

새누리당이 1년 반만에 호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새누리당은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호남 지원 방안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월 황우여 대표 주재로 전주와 광주, 순천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 호남 지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 7·30 재보선에서 순천·곡성에 출마, 여권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광양제철과 현대제철, 여수산단협의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순천으로 자리를 옮긴 지도부는 순천만 정원을 방문해 국가지정 및 정원 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순천대에서는 순천대학 의대 유치 등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를 놓고 순천 시민과의 간담회를 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박영선기자 pyj4079@ /순천=예정열기자 yjy@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91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은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사 장 : 1명
 - 상임이사(경영본부장) : 1명
 - 상임이사(사업본부장) : 1명
 - 비상임이사 : 4명
-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 관련법에 의거 임기 내 해임가능 및 임기종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
- 3. 응모자격**

[사장, 상임이사]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관리 등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분
 - 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급이상(사장)·4급이상(상임이사) 경력을 갖춘 분
 - 다. 공기업 경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 능력을 갖춘 분
 - 라.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분

[비상임이사]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제한
 - 회계사, 전직 4급이상 공무원, 경영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공사 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 4. 임용 예정 직위별 주요 직무내용**
 - 가. 사장(공사를 대표함)
 - 택지개발 및 분양
 -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주차장 설치 운영 및 수탁관리
 - 매장 및 화장 등 장사사업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 나. 상임이사(사장을 보좌함)
 - [경영본부장]
 - 경영기획 및 조직관리 업무
 - 총무, 인사, 노무업무 및 회계·계약 등에 관한 업무
 -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중장기 재정운영, 원가관리 관련업무
 - 매장·화장 등 장사사업 관리업무
 - 홍보 및 고객 관리업무
 - [사업본부장]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업무
 -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
 - 신사업개발 및 조정, 환경사업 관련업무
 - 임대주택 및 지하상가 관리업무
 - 체육시설관리 및 주차장 운영사업 관리업무
 - 택지분양 등 마케팅 업무
 - 다. 비상임이사
 - 공사경영에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경영 정책심의 의결
- 5. 직무 수행요건**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직무수행 요건
 -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람
- 6. 임용자의 임기 계약 및 보수**
 - 가. 사장, 상임이사
 - 임용일로부터 3년 성과계약
 - 연봉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되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가감 조정 가능
- 다. 비상임이사**
 - 무보수이며, 회의 참석 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수당 지급
- 7. 지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4. 8. 28 ~ 9. 5 (09:00 ~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팀(15층)
 - 주 소 : (우편번호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 8. 제출서류**
 - 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원진술서 2부(소정양식)
 - 나. 재산세 5년분 과세증명서(비상임이사 응시자 제외)
 - 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 소정양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9.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가. 1차 서류전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 나. 2차 면접심사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20분 이내 발표
 - 전문기술 능력, 비전 제시,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결정 및 협상능력 등 심층심사
 - ※ 비상임이사는 2차 면접심사를 생략함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서면 통지
- 10.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임 이사의 경우 응시자가 2배수에 미달 할 경우라도 합리하다 응시자가 있는 경우 재 공모하지 않고 추천함
 -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팀(062-600-6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국민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2014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